



# 법령·지침 등

##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

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

###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축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33호)되어 종전의 재해 위험구역의 명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되고 그 지정권자도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수선(大修繕)에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가구·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입의적인 가구·세대의 증가에 따른 구조안전상의 문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영 제3조의2제8호 신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미관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지역 전체로 확대하되,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계획적인 도시의 미관 및 환경정비가 가능하도록 함(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영 제55조 신설).

라. 내부마감재료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씰질방 등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 화재발생시의 위험감소를 도모함(영 제61조제2호 및 제5호).

마.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축진을 위하여 재해관리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

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범위를 당해 구역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의 120퍼센트에서 14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영 제86조의2 제4항).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제2호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로, “아동시설·노인시설”을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호중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로, “아동관련시설”을 “학원·아동관련시설”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홍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제86조의2의 제목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한다.

제8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종전의 제1항 내지 제3항) 중 “재해위험구역”을 각각 “재해관리구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허가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건축조례”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건축조례”로, “100분의 120”을 “100분의 140”으로 한다.

① 법 제5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상습침수·홍수·산사태·해일·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7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6호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균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균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균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2) 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1 제12호다목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권한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동장 또는 읍·면장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2. 사용승인전까지의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

2003. 2. 28. 건설교통부령 제353호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청약저축취급기관을 확대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등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청약저축업무의 효율향상과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청약저축취급기관을 국민은행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함(제5조제2항).

나. 하나의 입주자저축의 통장으로는 하나의 주택의 입주자로만 선정될 수 있는 원칙에 대한 예외에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는 자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제5조제5항제1호 신설).

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개정(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3호)으로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여부를 입주자모집 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제8조의2제3항제9호 신설).

라.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을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특별공급대상으로 하고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의 형평성을 꾀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협의에 의하여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조성된 택지 등을 공급받지 못한 자 및 소유주택이 철

거된 자에 대하여는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함(제19조제1항제1호·제2항제2호 및 제3항 신설 제31조제1항제2호).

마.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등에 대한 가점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마련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하여금 종전의 소득요건 등외에 토지 등 자신에 관한 별도의 오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이 낮더라도 토지 등 자신을 다수 보유한 가구를 입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2조제6항제8호 및 동조제9항 신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중 제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청약저축·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취급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중 “국민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각각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2.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제5조의2제2항중 “국민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하고, 제5조의3제2항중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4제4항중 “국민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

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하고, 제5조의5중 “국민은행과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6의 제목중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청약예금등취급기관지정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신청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청약예금등취급기관지정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서”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각각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후단중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한다.

9.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국민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각각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8호다목중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국민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사업주체·국민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국민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한다.

제18조중 “국민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유족”을 각각 “유족과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

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역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1.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제32조제3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당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3. 도시개발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제22조제6항중 “국민은행과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유족”을 “유족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동항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입주자격을 갖추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2.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및 세입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중 소득요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2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세대원”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으로 하며, 동항에 제8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 제2순위 및 제3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접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호가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8호나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6호 및 제8호다목의 규정은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각각 이를 적용하며, 제4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사회취약계층

가.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3점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제32조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건설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외에 건물(주택을 제외한다) · 토지 ·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⑩건설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 제2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제목 “청약예금등취급기관지정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신청서”로 하고, 본문중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제목 “청약예금등취급기관지정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서”로 하고, 본문중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한국주택은행에서”를 “정약저축 가입은행에 서”로, “한국주택은행”을 “은행”으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

2003. 3. 12. 대통령령 제17941호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기술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과제를 선정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선정하도록 하고, 신기술의 지정이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한면,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2월말일”을 “1월말”로 한다.

제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정수”를 “위원정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앙행정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설계자문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건설기술연구개발”을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중 “건설기술에 관한”을 “건설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과제(요약)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의4제3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4제3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제29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연구·개발과제의 공모 및 접수

제32조의2제1항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의 제목중 “보호기간”을 “보호기간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다시 정함”을 “연장함”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기간 만료 180일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신기술의 내용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46조의2제1항제1호중 “2종시설물(동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을 “2종시설물”로 한다.

제46조의8제5항중 “3월말”을 “1월말”로 한다.

제52조제5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설계 및 시공평가등)”을 “(시공 및 용역평가 등)”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시공평가 또는 용역평가 대상인”을 “제57조제1 항 각호의”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중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건설공사지원통 합정보체계”로 하고, 동항에 제14호의2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4의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유지·관리
- 15의2.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

청서의 접수

별표 1 제3호의 안전관리의 기술사란중 “소방설비”를 “소방”으 로 한다.

별표 7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법조문란을 각각 “법 제43조제2항 제1호”로 하고, 동표 제3호의 해당법조문란을 “법 제43조제2 항제2호”로 하며, 동표 제4호의 해당법조문란을 “법 제43조 제2항제3호”로 하고, 동표 제5호 및 제6호의 해당법조문란을 각각 “법 제43조제2항제3호의2”로 하며, 동표 제7호의 해당 법조문란을 “법 제43조제2항제3호의3”으로 하고, 동표 제8 호 및 제9호의 해당법조문란을 각각 “법 제43조제2항제4호”로 하며, 동표 제10호의 해당법조문란을 “법 제43조제2항제5 호의2”로 하고, 동표 제11호의 해당법조문란을 “법 제43조제 2항제6호”로 하며, 동표 제12호의 해당법조문란을 “법 제43 조제2항제7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제 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5조제3항 및 제46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건설교통부 인사**

**1급 전보 :** 차관보 김 일 중(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장)

수송정책실장 정 수 일(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1급 승진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이 춘 희(주택도시국장)

**국장급 전보 :** 건설경제국장 박 성 표(부산지방항공청장)

주택도시국장 정 창 수(대통령비서실 파견)

주택도시국 도시건축심의관 서 종 대(총무과장)

광역교통정책실 교통시설국장 이 영 근(국립지리원 측지과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서 정 석(건설경제국장)